

CESCO Food Safety NEWSLETTER

2018. February _ Vol. 77

발행처 _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주소 _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주) 세스코 터치센터

대표번호 _ 02-2140-0288 http://cescofood.co.kr

NEWS 식품안전 주요 NEWS

봄 개학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

- 2.26~3.9,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문방구 35,000여곳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자류, 음료류,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과 분식점, 문방구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3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종사자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제재와 벌칙

위반 내용	행정제재	벌칙
무신고 영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영업정지 15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고열량·저영양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월 20일)



CESCO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세스코 식품안전서비스

3,021가지의
도달 식품위생 솔루션

🏠 세스코 식품안전 위생진단 서비스 (제조업/접객업)

식품안전컨설턴트가 정기적으로 고객사업장의 식품/원료/조리도구 위생부터 현장시설/설비의 안전성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컨설팅 하는 서비스입니다.

7 대 식품안전관리 항목으로

🍴 국내외 식품위생법 및 관리기준 적용한 위생진단 서비스

📌 시설/설비/개인위생 등의 위생관리 포인트 체크

💡 식품위생 관리방법 및 솔루션 제공

경기도 특사경, 사용불가 원료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등 90개소 적발

- 건강기능식품·명절 다소비식품등제조·판매업소5개분야502개소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건강기능식품·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소 50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사용불가 원료사용(말벌주) 1곳 ▲미신고영업 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4곳 ▲기타 51곳 등 총 90개 업소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90개 위반업소 중 85개소는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용하면 안되는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판매하는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행정제재와 벌칙

위반 내용	행정제재	벌칙
무신고 영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불가 원료 사용	품목제조정지 15일, 해당 제품 폐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영업정지 15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경기도청, 2월 13일)

서민 찾는 무한리필 업소, 알고봤더니 무한양심 불량

- 경기도 특사경, 무한리필 맛집 업소 70개소 점검. 15개소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성남,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등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0개소 ▲영업자준수사항위반 2개소 ▲표시기준위반 2건 ▲허위표시금지 위반 1개소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는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는 즉각 시정조치시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한리필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과 서민이라는 점에서 이들 업소의 정직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 라고 밝혔다.

☞ 행정제재와 벌칙

위반 내용	행정제재	벌칙
원산지 표시위반	-	거짓표시 :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 : 5만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 경기도청, 2월 22일)



세스코 식품안전감사 서비스

내 사업장 식품안전 체계의 새로운 변화!!

[P1] 식품위생진단
“약속된 기준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


[P2] 식품안전진단
“실행해야 할 기준이 적정하고 실행이 양호한지” 평가&진단

고객 니즈에 맞춘 식품안전감사 제공

- 업종 특성, 글로벌 위생관리기준 접목
- HACCP컨설팅 know-how 접목
- Data 기반의 객관적 자료, 문제 발생 사전예방 가능

해충방제+Food 복합서비스로 시너지 효과

- 시설+설비 2개 관점 진단 ▶ 이물 관리 특화
- ▶ 이물 클레임 예방



농산물에 등급·당도 등 품질을 표시하는 권장품질표시해야

- 표준규격품외에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이 해당... 8월 21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장 겉면에 품목, 등급 등을 표시한 표준규격품 외에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그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해체하여 다시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이외의 실질적인 의무표시 사항이 없어,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의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당도 등 품질을 표시하는 권장품질 표시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당도 등 품질을 표시(이하 "권장품질표시"라 한다)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권장품질표시 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기준 적합성 조사 ▲권장품질표시 농산물 시료 수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 기준·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 권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은 금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법제처, 2월 21일)

농산물 잔류농약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2019년부터 농산물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식약처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도입·시행되어 농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PLS 전면 도입은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ppm 이하)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에 농약 PLS를 적용하고 있으며, '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또한 농약 PLS 시행 전까지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예정이라며, 농산물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또는 '세스코 식품안전' 사이트([▶자료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약처, 2월 22일)

세스코 표시 검증/작성 서비스



‘표시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

- 최신 정책, 법령 관리 통한 최적의 ‘제품 표시’ 유지
- 잦은 인력 변화에 따른 법규 리스크 관리 역량 유지
- 명확한 원인 파악을 통한 대응논리 및 소명절차 지원
- 전문교육, 영양성분 분석까지 ‘One-stop’서비스 연계

【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솔루션 제공

【 현장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현장방문, MD당 20제품

【 표시 작성 】

- 표시사항, 영양성분표 작성 및 솔루션 제공

【 Online/광고물 검증 】

- 셀링포인트/체험기/댓글 등 허위,과대 광고 검증

제품 출시 이전부터 이후까지 모든 표시 관련 법규 기반의 체계적인 제품표시 리스크 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 '18년 6월 1일부터 연매출액 1억원 이상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 추적관리 대상에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 품목류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도 2018년 6월 1일부터 유통이력 추적관리 대상에 포함 하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 법령과의 통일성,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법령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6년 이후 품목류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도 2018년 6월 1일부터 유통이력 추적관리 대상에 포함(시행일 :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 6월 1일)
2.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중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하기 위한 서류에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외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추가
3. 할랄인증서 인정범위를 인증내용을 증명하는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까지 확대
4. 위해 우려가 높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현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5. 유통기한 위·변조, 중량 변조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영업등록을 취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월 9일)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등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식품등범위 조정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수입 검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박람회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 대상 품목 중 축산물 제외
2. 조건부 수입신고 수리한 식품에 대하여 지방청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입고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점을 조정 : 조건부 수입신고한 식품이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이후 확인
3.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
 - 1) 중국산 양파등 농·임산물 8개 품목과 호주산 과실주 등 가공식품 6개 품목을 인정범위에 추가
 - 2) 미국산 자몽과 토마토케첩 등 2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 3) 브라질산 갈색설탕, 호주산 강력밀가루 등 2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 본 건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입법/행정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월 7일)



해외식품 위생평가 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제4호)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 점검기준

주문자상표부착 식품 등을 수입 영업자는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점검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



- 상향 평준화된 객관적 평가 시각
-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적용



- 충분한 인적, 물적, 경험적 자원 확보
- 해외식품 위생평가 대상업체 접근 편의성 확보
-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준 높은 평가기관



- 위생평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위생평가원 심사 및 평가 체계 구축
- 위생평가원 윤리의식 강화

'18년 2~3월 점검 일정

점검명	점검 대상	점검기간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절임배추, 꽃감, 과메기, 멸치 등	2.22 ~ 2.28
○ 봄 신학기 합동점검	학교급식.매점, 집단급식소식품/대형식재료 판매업체, 분식점 등	2.26 ~ 3.9
○ 자가품질검사 자체실시 업체 점검	과자류, 김치류 등 식품제조 / 인삼, 비타민 등 건기식제조(1차)	3.5 ~ 3.9
○ 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푸드트럭 등 조리.판매	3.19 ~ 3.23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산업 NEWS

식약처, 20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교재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교재'를 발간하였다.

이번 교재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하는 자세, 업종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등 위생감시 요령과 식중독 예방 관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안전관리인증 기준 등 기초 지식을 함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업종별 지도.점검표도 수록되어 있어 위생감시의 주요 점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3 식품접객업체 안전관리

- 후진발령**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주(대표)를 위촉하여 식품 안전 관리 및 안전관리교육 실시
- 중점 지도·점검 사항**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 기타 사항**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1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점검표

▶ 영업신고사항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영업장 면적(㎡)	종사자
영업장 형태(가/다)	연간 매출액(만원)
주요 생산품목	주요 생산품목

▶ 지도·점검 현황

구분	세부 항목	점검 사항	점검 결과	개선 또는 조치 사항
1. 제조업체	가. 영업등록	▶ 영업등록 여부		
	나. 식품제조업체	▶ 식품제조업체 영업등록 여부		
	다. 영업장 면적	▶ 영업장 면적 준수 여부		
	라. 기타사항	▶ 기타사항 준수 여부		
2. 영업장	가. 생산시설 및 위생관리	▶ 생산시설 위생관리 준수 여부		
	나.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 사용 준수 여부		
	다. 수질검사	▶ 수질검사 준수 여부		
	라. 기타사항	▶ 기타사항 준수 여부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세스코 식품안전' 사이트([▶ 자료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월 5일)

HACCP 의무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0호)
cescofood.co.kr

HACCP 정기 과정 (3/14, 3/26)

- 년 1회 HACCP 팀장이 반드시 이수 (법정 교육)
- 효율적인 HACCP 사후관리 방법, 요령 습득

HACCP 경영자 과정 (3/14)

- HACCP 추진 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인식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참석

HACCP 팀장 과정 (3/15~16, 3/29~30)

- 신규로 HACCP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
- HACCP 팀장 또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
- '세스코 시뮬레이션센터'에서 현장 실습까지 한번에!

식품 전문 교육

표시연관 법규와 식품표시실습 (3/13)

- 표시 연관 법규를 한눈에 소개(법, 공전, 기타 법규)
- 표시기준을 이해하고 표시 근거와 영양성분표, 표시사항, 원산지를 직접! 작성하고 오류사항도 찾기도 한번에!

식품공장 해충 방어와 이물분석 (3/27)

- 식품공장 유래 주요 해충의 특성을 알아보고 제어법 제공
- 주요 이물의 동정방법과 취약포인트 개선방안

